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26호
----------	------

2020. 3. 23.

건 명	논산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역량개발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20. 3. 13.
소 관 위 원 회	산 업 건 설 위 원 회	회부연월일	2020. 3. 13.

## 보 고 내 용

### 제안이유

- 근거 법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논산시 농업을 선도해 나갈 정예농업인 육성을 위한 대학의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을 명확히 하고 본 대학을 수료한 학생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 개설을 운영하고자 함

### 주요내용

- 법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내용 변경(안 제1조)
- 대학의 운영 조직의 구성원 명칭에 따른 내용 일괄변경(안 제4조 제1항, 제2항, 제3항, 제5조, 제7조제1항, 제2항, 제8조제3호, 제10조 제1항, 제2항, 제11조제1항, 제13조)
- 수료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과정 신설(안 제9조제4항)
- 대학의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변경(안 제9조제2항)

###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농촌진흥법 제1조 및 동법 제1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